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6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조경태·주진우·김소희

최수진 • 이헌승 • 최은석

장동혁 · 조은희 · 박덕흠

이상휘 · 최보윤 · 박준태

한지아 · 우재준 · 김상욱

안상훈 • 김형동 • 김도읍

의원(18인)

제안이유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과 자본, 일자리 등으로 인한 차이가 인구이동과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켜 비수도권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특히, 인구 유출입에서도 수도권이 상위 지역을 비수도권은 하위 지역을 차지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의 조화로운 배치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산업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청년층 인구의 중요성,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수요를 고려한 취업격차 해소 대책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세대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 체계적인 대책을 토대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세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의 윤택한 삶,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에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 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차해소산업발 전위원회를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 (안 제8조).
- 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함에 있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마.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안 제13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관계 법 령에 격차해소산업 사업자가 전력 사용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 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력을 이용하도록 권고함(안 제16조).
- 사. 격차해소산업의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재 정법」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수도권 · 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윤택한 삶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세대가 비수도권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2. "비수도권"이란 제1호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를 말한다.
- 3. "격차해소산업"이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중점산업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 간 취업 및 발전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신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현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 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을 적용받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법 시행 시점 당해 연도 이전 5년 중 3개년 이상 인구의 순감소 광역

자치단체를 의미하고, 해당 지역은 5년마다 선정한다.

- ② 격차해소산업 이외에 취업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는 수도 권과 비수도권 간 지속적인 균형발전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비수 도권 지역에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격차해소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격차 해소 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제6조(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격차해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 단위로 격차해소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격차해소산업의 광역자치단체에 유치, 발전,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기본방향
 - 2. 제1호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정비, 재정·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 3. 격차해소산업 관련 창업 및 우수 인재 확보에 관한 사업

- 4.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격차해소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격차해소산업 발전 실행계획(이하 "실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격차 해소 산업 관련 기구) 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차해소산업발전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담당 업무를 지원한다.
 -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격차해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 3. 격차해소산업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격차해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특례 제공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격차해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격차해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임원 중 1인이 된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 및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관련 기구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

- 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기타 위원회 및 산하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일반회계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 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격차 해소산업의 기반 및 생산 시설의 조성 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 제10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및 발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격차해소산업의 유치, 발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조성에 관한 사항
- 2. 격차해소산업의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격차해소산업의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격차해소산업 기업 등의 해당 산업 및 기반 시설의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융자와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해소산업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의 일정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12조(격차해소산업의 기업 및 청년근로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격차해소산업 관련 기업 등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해당 산업

- 의 신설·증설과 이전, 창업 등을 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수도권에 소재하거나 소재할 예정인 격차해소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세대 근로자에게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정하여 해당 주택의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에서 우대할 수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격차해소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격차해소산업 관련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격차해소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격차해소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격차해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 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격차해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학교의 설립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격차해소산 업 지역에 학교 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광역시·도·특별 자치도 교육감은 인가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격차해소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전력 사용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친환경 전력(이하 "친환경에너지"라 한다)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사업자의 친환경에너지 사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친환경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수 있다.
- ④ 그 밖에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격차해소산업의 광역 자치단체에서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격차해소산업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 2. 제13조에 따른 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업 추진

- 3.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업 추진
- 4. 그 밖에 격차해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 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격차해소산업 기업 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건, 절차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